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계좌간 자동이체 (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해 각종 대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자동이체 방법)

- ① 은행은 신청인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출금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신청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지정입금계좌로 이체한다.
- ② 지정출금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한다.
- ③ 이체처리결과는 별도 통지없이 통장에 기입한다.
- ④ 이체가 가능한 예금잔액은 해당 지정출금일의 은행영업시간 이내에 입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도 포함된다. 다만, 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한다.

제3조 (지급 자금부족 때의 처리)

지정출금일에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

- ① 대출금 납부이체 시 당행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잔액범위내에서 출금처리되며, 타행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당행 포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출금처리된다.
- ② 적립식 투자상품의 납부이체 시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신청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체신청금액 전액이 출금처리되지 않으므로 해당월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4조 (과실책임)

자동이체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 신청인의 과실에 의하여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여러 건의 이체 처리)

지정출금일에 수종의 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이체처리순서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① 지정출금계좌가 당행계좌인 경우는 출금요청이 당행에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출금된다.
- ② 지정출금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는 지정출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증권의 부도)

신청인의 지정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자동이체처리된 금액을 취소한다.

제7조 (신청내용의 변경·해지신고)

신청인이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출금일 전 15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관련 예금 및 각 상품의 개별약관 및 은행내규 등을 준용한다.